

문서번호	정보화지원 과-100797	주무관	통합관제운영팀 장	★정보화지원과 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1. 13.	이영란	윤혁구	양선희	고한석	하철승	11/13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**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
센터 구축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2015. 11. 11.



강 북 구
(정보화지원과)

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 중 일부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, u-강북구 통합관제센터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-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삭제된 내용 반영
-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개정 (행정자치부, 2013.4.22)

II 정비 대상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 제9조(사전협의)
 -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→ 제9조 삭제

※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, 개인정보보호법(2011.3.29)에 없는 내용이고,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(행정자치부, 2013.4.22)에서 삭제

- 제15조제1항 단서 중 "해당부서" 를 "해당 부서" 로 함

Ⅲ 추진일정

- 입법예고(20일 이상) : 2015. 11. 17 ~ 12. 7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12. 23
- 구의회 상정 : 2016년 1월 예정
- 조례 공포 : 2016년 2월 예정

붙 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
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 끝.